

<화물운송 종사자격 참고자료>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이 가이드북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응시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이며,
**2004. 05. 29(토) 최초 인터넷 게시 이후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시한 내용입니다.**

-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제1장 도로교통법령

제1절 총칙	1
제2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제3절 차마의 통행	12
제4절 자동차등의 속도	16
제5절 서행 및 일시정지 등	17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	19
제7절 통행의 우선순위	20
제8절 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0
제9절 운전면허	22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처벌의 특례	34
제2절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개요	36

제3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제1절 총칙	50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52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67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69
제5절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 교육	71

제6절 사업자단체	78
제7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80
제8절 보칙 및 별칙 등	81

제4장 자동차관리법령

제1절 총칙	87
제2절 자동차의 등록	88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93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94
제5절 자동차의 검사	94

제5장 도로법령

제1절 총칙	99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01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령

제1절 총칙	104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105

제1장 도로교통법령

제1절 총칙

1. 정의(법 제2조)

- 가.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나.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다.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 라. 차도(車道)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마. 중앙선 :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다만,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 바.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 사.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 아.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자.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차.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카. 교차로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
- 타.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파. 신호기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 하. 안전표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

거. 차마 :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

1)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2)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너. 자동차 :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등)

더.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러.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머.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버. 운전 : 도로(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사고발생시의 조치 등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서.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어. 앞지르기 :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저. 일시정지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쳐. 모범운전자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 도로의 개념(법 제2조제1호)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를 말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1) 면도 :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차와 자동차의 구분(법 제2조제17호)

가. 자동차와 차의 구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차와 자동차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상에서의 운전과 이에 따른 단속, 행정처분, 사고처리 등의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나. 차 (법 제2조제17호)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1) 전동차·기차 등 궤도차, 항공기, 선박, 케이블 카, 소아용의 자전거(예 :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은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는 차에 해당하고, 손수레 운전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는 보행자로 본다.

다. 자동차 (법 제2조제18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법 제2조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사용신고의무가 있으며,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신호등 화	원형등화	녹색의 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신호등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신호등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자전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자전거횡단신호등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는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버스신호등	녹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 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2. 안전표지의 종류(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가.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형교차로	T자형교차로	Y자형교차로	ㅏ자형교차로	ㅓ자형교차로	우선도로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회전형교차로	철길건널목	우로굽은도로	좌로굽은도로	우좌로이중굽은도로	좌우로이중굽은도로
2방향통행	오르막경사	내리막경사	도로폭이좁아짐	우측차로없어짐	좌측차로없어짐	우측방통행
양측방통행	중앙분리대시작	중앙분리대끝남	신호기	미끄러운도로	강변도로	노면고르지못함
과속방지턱	낙석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자전거	도로공사중	비행기
횡풍	터널	교량	야생동물보호	위험	상습정체구간	

나.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통행금지	자동차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경운기·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정차·주차금지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보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			

다.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및우회전	직진및좌회전	좌회전 및 유턴	좌우회전	유턴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좌측면통행	진행방향별통행구분	우회로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노인보호 (노인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안)	장애인보호 (노인보호구역안)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통행우선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

라.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100m 앞 부터	여기부터 500m	시내전역	일요일 · 공휴일 제외	08:00~20:00	1시간이내 차들수있음
거리	거리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적신호시	앞에 우선도로	안전속도 30	안개지역		차로엄수
신호등화상태	전방우선도로	안전속도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규제
건너가지마시오	승용차에 한함	속도를줄이시오	충돌주의	터널길이 258m	구간시작 200m
통행규제	차량한정	통행주의	충돌주의	표지설명	구간시작
구간내 ↔ 400m	구간 끝 → 600m			↑ 전방 50M	3.5t
구간내	구간끝	우방향	좌방향	전방	중량
3.5m ↘ ↗	100m				
노폭	거리	해제	견인지역		

마. 노면표시

- 1)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 3) 노면표시의 기본색상 중
 - 백색은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중앙선표시, 노상

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표시)

-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
- 적색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에 사용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로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진로변경제한선	진로변경제한선	노상장애물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직진및좌회전금지	직진및우회전금지	좌우회전금지	유턴금지	주차금지	정차·주차금지
정차·주차금지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	서행	서행	일시정지
양보	주차	정차금지지대	유도선	좌회전유도차로	유도
회진교차로양보선	유도	유도	횡단보도예고	정지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자전거횡단보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및방면
진행방향및방면	비보호좌회전	차로변경	오르막경사면		

제3절 차마의 통행

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시행규칙 별표 9)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고 속 도 로	편 도 2 차 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 도 3 차 로 이 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한 통행방법(법 제13조)

- 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나.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라. 차마의 운전자는 ‘다’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다.
 -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마.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바. 차마(자전거는 제외)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사.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 9)
- 아.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 9)
- 자.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시행규칙 별표 9)

차.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시행 규칙 별표 9)

- 1) 자전거
- 2) 우마
- 3)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4)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5)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카.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9)

타. 안전거리확보 등(법 제19조)

-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된다.
-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진로양보의무(법 제20조)

- 1)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①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②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실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실지 아니한 자동차

3.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법 제39조)

-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실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운행상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준을 넘는 승파 및 적재의 허가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시행규칙 제26조)

- 가. ‘3.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가’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 2)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나. '3.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가'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2) 분할할 수 없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 다.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형겼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4절 자동차등의 속도(시행규칙 제19조)

1. 도로별 차로 등에 따른 속도

도로 구분		최고속도		최저속도
일반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매시 80km 이내		제한 없음
	편도 1차로	매시 60km 이내		
고속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매시 100km • 매시 80km(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매시 50km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	• 매시 120km 이내 • 매시 90km 이내(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편도 1차로	매시 80km		매시 50km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90km		매시 30km

2. 이상 기후 시의 운행 속도(시행규칙 제19조)

이상기후 상태	운행속도
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②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
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②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③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서행 및 일시정지 등(법 제31조)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위험 예상한 상황적 대비)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①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각각 서행(법 제25조제1~2항) ②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법 제26조제2항)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법 제27조제4항)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 법 제31조제1항> ①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④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⑤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정지	•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 즉, 당시의 속도가 0km/h인 상태로서 완전한 정지상태의 이행	①차량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 ②차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일시 정지	●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의 의미(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	<p>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법 제13조제2항)</p> <p>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법 제24조제1항)</p> <p>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법 제27조제1항)</p> <p>④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법 제28조제3항)</p> <p>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또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법 제29조제4항)</p> <p>⑥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법 제31조제2항)</p> <p>⑦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법 제31조제2항)</p> <p>⑧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법 제49조제1항제2호)</p> <p>⑨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p>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

1.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 가. 좌회전 -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나. 우회전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법 제26조)

- 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7절 통행의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등(법 제29~30조)

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1)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2)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 하여야 한다.
-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6) 소방차·구급차·헬액 공급차량 등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의 속도 제한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

- 2) 법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 금지
- 3) 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 금지

제8절 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1. 자동차의 정비

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

- 나.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0조5항)
-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자동차의 점검(법 제41조)

- 가.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나. 경찰공무원은 ‘가’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 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다. 지방경찰청장은 ‘나’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국가경찰공무원이 ‘다’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비 불량표지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 국가경찰공무원이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 라.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지방경찰청장은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다’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절 운전면허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구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운전면허취득 응시기간의 제한(법 제8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 제82조 제2항)

- 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 나.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다. 음주운전 금지,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라.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과로·질병·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마. 음주운전 금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바. 다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1)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2)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여부측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4)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5)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6)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사.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3.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감경(시행규칙 별표 28)

가. 감경사유

-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라)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3)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잊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앓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 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2011.12.9>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라. 별점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별점기준(시행규칙 별표 28)

구 분		별점	내 용
인적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피해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별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별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별점기준(시행규칙 별표 28)

불이행 사 항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별 점	내 용
교통사고 야 기 시 조 치 불 이 행	제54조 제1항	15 30 60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 교통법규 위반 시 별점(시행규칙 별표 28)

범 칙 행 위	별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속도위반(60km/h 초과)	6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 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지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범 칙 행 위	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시행령 별표 8)¹⁾

범 칙 행 위	차종별 범칙금액(만원)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위반(60km/h 초과)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지 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횡단·유턴·후진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7	6

범 칙 행 위	차종별 범칙금액(만원)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금지·제한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주차금지위반 ○ 주차금지위반 ○ 정차·주차방법위반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위반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고속도로 진입위반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 ○ 속도위반(20km/h 이하) ○ 진로 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서행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위반 		3

범 칙 행 위	차종별 범칙금액(만원)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속도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등화 점등 · 조작 불이행(안개 · 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 ○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승차 거부 ○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5(모든 차마)	6
		4
		3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바. 자동차 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 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취소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자동차 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 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 한 죄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제93조제1항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 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정지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별점
1	자동차 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100
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100

1.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2.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별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사.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7)

범 칙 행 위	차종별 범칙금액(만원)	
	승합 차동차등	승용 차동차등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14	13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60km/h 초과	17	16
- 40km/h 초과 60km/h 이하	14	13
- 20km/h 초과 40km/h 이하	11	10
- 20km/h 이하	7	7
○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금지의 장소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9(10)	8(9)

* 과태료 금액에서 광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시행령 별표 10)

범 칙 행 위	차종별 범칙금액(만원)	
	승합 차동차등	승용 차동차등
○ 신호 · 지시위반	13	12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속도위반 - 60km/h 초과	16	15
- 40km/h 초과 60km/h 이하	13	12
- 20km/h 초과 40km/h 이하	10	9
- 20km/h 이하	6	6
○ 통행금지 · 제한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 · 주차금지위반	9	8
○ 주차금지위반		
○ 정차 · 주차방법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처벌의 특례

1. 특례의 적용 및 배제

가. 특례의 적용(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1)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어지는 예외단서 11개 항목 사고는 아래 “나. 특례의 배제” 참조).

나. 특례의 배제(법 제3조제2항의 예외단서)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

- 1) 신호 · 지시위반사고
-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 4)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 7) 무면허운전사고
- 8) 주취운전 · 약물복용운전 사고
- 9) 보도침범 ·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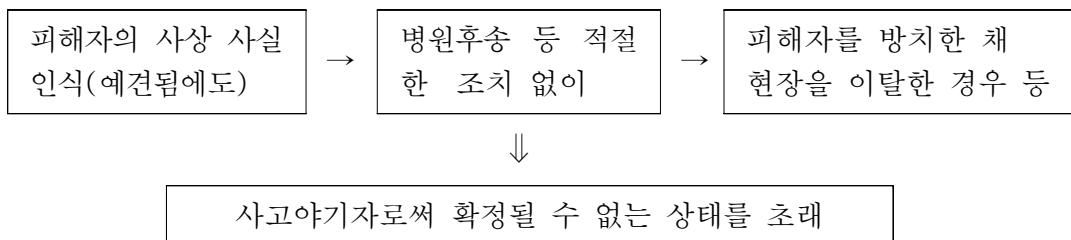
2. 처벌의 가중

가. 사망사고

- 1)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 2) 사망사는 그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한다.
- 3)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내 사망하면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나. 도주사고

-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은 특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가중한다.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도주(뺑소니)사고의 성립요건



다. 도주사고 적용사례

- 1)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 2)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 도주한 경우
- 3) 사고현장에 있었어도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신고한 경우
- 4) 부상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5)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6)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7)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라. 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 피해자가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치 않는 경우
- 2)加害者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 주고 가버린 경우
- 3) 교통사고加害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 4) 교통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한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제2절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개요

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가. 정의

신호 및 지시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내용 중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 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신호위반의 종류

- 1) 사전출발 신호위반
- 2) 주의(황색)신호에 무리한 진입
- 3) 신호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다. 황색주의신호의 개념

- 1) 황색주의신호 기본 3초

큰 교차로는 다소연장하나 6초 이상의 황색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가 나오기 전에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 2) 선 · 후신호 진행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3초 여유)
- 3) 대부분 선신호 차량 신호위반, 단 후신호 논스톱 사전진입 시는 예외
- 4) 초당거리 역산 신호위반 입증

라. 신호기의 적용범위

신호기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교차로나 횡단보도에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적용될 수 있다.

- 1) 신호기의 직접영향 지역
- 2) 신호기의 지주 위치 내의 지역
- 3) 대향차선에 유턴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신호기 적용 유턴 허용지점으로까지 확대 적용
- 4) 대향차량이나 피해자가 신호기의 내용을 의식, 신호상황에 따라 진행중인 경우

마.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에 대한 법률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 사고 시 신호위반 적용

바.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중 사고

대형사고의 예방측면에서 신호위반 적용

사. 지시위반 : 규제표지 중 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 통행금지표지, 자동차통행금지표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표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표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통행금지표지, 자전거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 등에 대해 적용

아. 신호 ·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 소 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 경찰관 등의 수신호 ·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일시정지표지)이 설치된 구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점멸신호등의 경우 · 기타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일시정지표지 제외)이 설치된 구역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 ·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과실 · 부주의에 의한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교통상 적절한 행위는 예외
시설물의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단지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2. 중앙선침범, 횡단·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가. 중앙선의 정의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나. 중앙선침범의 한계

사고의 참혹성과 예방목적상 차체의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침범 적용

다. 중앙선침범이 적용되는 사례

1)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침범 사고

- 좌측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U턴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다시 진행차로로 들어오는 경우
-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오는 경우(대향차의 차량 아닌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 적용)
-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추월 중 발생한 경우

2) 현저한 부주의로 중앙선침범 이전에 선행된 중대한 과실사고

- 커브길 과속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단, 제한속력 내 운행 중 미끄러지며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침범 적용 불가
- 기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예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차내 잡담 등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역주행 자전거 충돌사고 시 자전거는 중앙선침범)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중 사고 발생 시 중앙선침범 적용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중 발생한 사고
- 예외사항 :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유지 작업차, 사고응급조치 작업차

라. 중앙선침범 적용

특례법상 11항목 사고로 형사입건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U턴, 회전중 중앙선침범 사고 · 의도적 U턴, 회전중 중앙선침범 사고 ·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침범 -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침범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으로 중앙선침범 - 차내 잡담등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 기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 만부득이한 중앙선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피양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 위험 회피로 인한 중앙선침범 - 충격에 의한 중앙선침범 - 빙판등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침범

마. 중앙선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파트 단지 내나 군부대 내의 사설 중앙선 · 일반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시설물의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지방 경찰청장이 설치한 중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바.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1)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사고

-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2) 사고피양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침범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 앞차의 정지를 보고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보행자를 피양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3) 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을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눈 또는 흙더미에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 전반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중앙선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한 도로에서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차선규제봉 또는 오뚜기 등 설치물을 넘어 사고 발생된 경우
-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반대편 도로의 갓길을 충돌한 자피사고
- 학교, 군부대, 아파트 등 단지내 사설 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에서 회전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 중앙선이 없는 굽은 도로에서 중앙부분을 진행 중 사고 발생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방향 앞차를 뒤따르다가 그 차를 추돌한 사고의 경우

3. 속도위반(20km/h초과) 과속 사고

가. 과속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km/h 초과된 경우이다.

※ 경찰에서 사용 중인 속도추정방법

- ① 운전자의 진술
- ② 스피드건
- ③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 ④ 제동흔적 등

나. 과속 사고(20km/h 초과)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	·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 차량(20km/h 초과)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속도 20km/h 이하 과속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 속도 20km/h 초과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 1)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 속도 20km/h 초과한 경우 2)일반도로 제한 속도 60km/h, 4 차로 이상 도로 80km/h에서 20 km/h 초과한 경우 3)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 구간에서 제한 속도 20km/h를 초과한 경우 4)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일 때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5)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결빙,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6)총중량 2,000kg에 미달자동차를 3배 이상의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 30km/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7)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 25km/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속도 20km/h 이하로 과속하여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 ·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중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시설물의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중 1)규제표지 일련번호 224호(최고 속도제한표지) 2)노면표시 일련번호 517~518호 (속도제한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안전표지 중 1)규제표지 226호(서행표지) 2)보조표지 409호(안전속도표지) 3)노면표시 519~520호(서행표시)의 위반사고에 대하여는 과속 사고가 적용되지 않음

4.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가. 중앙선침범, 차로변경과 앞지르기 구분

- 1)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결친 행위

2) 차로변경 : 차로를 바꿔 곧바로 진행하는 행위

3) 앞지르기 : 앞차 좌측 차로로 바꿔 진행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나.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금지 장소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 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금지 장소외 지역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방법 · 금지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방법 · 금지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 불가항력적, 만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 1)병진 시 앞지르기 2)앞차의 좌회전 시 앞지르기 3)위험방지를 위한 정지·서행 시 앞지르기 4)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5)실선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1)우측 앞지르기 2)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 만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 병진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가. 철길 건널목의 종류

종 별	내 용
1종 건널목	차단기, 건널목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종 건널목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3종 건널목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 철길 건널목(1, 2, 3종 불문)	· 역구내 철길 건널목의 경우
피해자적 요 건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로 대물피해만을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과실 1) 철길 건널목 직전 일시정지 불이행 2) 안전미확인 통행 중 사고 3) 고장 시 승객대피, 차량이동 조치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 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 ※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가.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개념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였고, 신호변경이 되었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의 주의 촉구

다.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결과조치

형 태	결 과	조 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중 사고	이륜차를 보행자로 볼 수 없고 제차로 간주하여 처리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중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이륜차를 타고가다 멈추고 한 발을 페달에,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던 중 사고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 소 적 요 건	· 횡단보도 내	·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때의 횡단보도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드러누워 있거나, 교통정리, 싸우던 중, 택시를 잡던 중 등 보행의 경우가 아닌 때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 앞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보행신호(녹색등화)에 횡단보도 진입, 건너던 중 주의신호(녹색등화의 점멸) 또는 정지신호(적색등화)가 되어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적색등화)에 건너던 중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 서 있던 중 사고 보행자가 주의신호(녹색등화의 점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정지신호(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사고
시 설 물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놀라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다 넘어져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비접촉사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고 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횡단보도로 간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나 학교, 군부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경우는 제외

7. 무면허 운전 사고

가. 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이 금지된 경우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 1)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2)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4)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5)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 6) 면허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7)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중량 3톤을 초과함에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8)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9) 면허 있는 자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10) 군인(군속인 자)이 군면허만 취득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 11)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지나 운전 중 사고 야기한 경우
- 12)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13)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나. 무면허 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특정인만 출입하는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
피해자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사고를 입는 경우 · 대물 피해만 입는 경우도 보험면책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 피해만 입는 경우로 보험면책으로 합의된 경우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2)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3)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4)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5)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6)면허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8)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사유 상태이나 취소처분(통지) 전 운전

8. 음주운전·약물복용 운전 사고

가.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례

-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및 공개되지 않는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행위
도 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

-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 다) 공개되지 않는 통행로(공장,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

- 2)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

- 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공장,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피해자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사고를 입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운전자의 과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정거리 운행한 때· 음주 한계 수치가 0.05% 이상일 때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한계 수치 0.05% 미만일 때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가. 보도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 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개념

구 분	내 용	실 예
일단정지	·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 (운행의 순간적 정지)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일시정지	·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 (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 · 어린이, 영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다. 보도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내의 사고 1)보도침범사고(제13조1항) 2)통행방법위반(제13조2항)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피해자적 요 건	· 보도상에서 보행 중 제차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도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운전자의 과 실	· 고의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시설물의 설치요건	· 보도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	· 학교,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개문발차 사고)

가. 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나. 개문발차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자동차적 요 건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에만 적용	· 이륜, 자전거 등은 제외
피해자적 요 건	· 탑승객이 승하차 중 개문된 상태로 발차하여 승객이 추락함으로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적재되었던 화물이 추락하여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 실	· 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발차한 행위	· 차량정차 중 피해자의 과실사고와 차량 뒤 적재함에서의 추락사고의 경우

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사례

- 1)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그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2) 택시의 경우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는 승객자신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승객탑승 후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한 경우
- 3)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의 낙상사고의 경우

라. 적용 배제 사례

- 1) 개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 난 경우
- 2) 택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 자신이 출입문을 개폐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

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자동차적 요 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장소
피해자적 요 건	•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성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 실	•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성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input type="radio"/>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 <input type="radio"/> 화물의 원활한 운송 | <input type="radio"/> 공공복리 증진 |
|------------------------------------|----------------------------------|-------------------------------|

2. 정의(법 제2조)

가.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및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종류	세 부 기 준
화 물 자동차	경형 (일반형)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경형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구 分	유 형	세 부 기 준
화 물 자동차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구 분	유 형	세 부 기 준
화 물 자동차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 용인 것
특 수 자동차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 고장 ·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 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화물자동차의 종류 중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실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계산(計算)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3)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 자.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카.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시행령 제3조)

-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시행령 제2조)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 라. ‘가’항 및 ‘다’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마.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9항, 시행령 제3조의2)

3. 결격사유(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제19조제1항(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 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제19조제1항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운임 및 요금 등(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5조)

- 가.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 2) 운임·요금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5. 운송약관(법 제6조)

- 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 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6. 운송사업자의 책임(법 제7조)

- 가.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毀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 나. “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다”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마. 당사자 쌍방이 “라”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및 “라”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가.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1조의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가)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 2)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3) 운송가맹사업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등의 가입 범위(시행령 제9조의7)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계약의 체결의무(법 제36조)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2)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1조의14)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법 제37조)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9) 그 밖에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나)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법 제38조)

- 1)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3) 1) 및 2)에 따른 통지의 방법 ·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의 통지(시행규칙 제41조의15)

제41조의1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 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만5천원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5만원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

- 가.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조제3호 후단내용 :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신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 라.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마.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자.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카.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타. “카”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파.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 하.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너.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러. 운송사업자는 제 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 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머.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버.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1조의7)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2.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

서.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부터 “서”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2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9.19.>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다. 공영차고지
 -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 마. 화물터미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5.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6.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p>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p>
<p>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p>
<p>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p>
<p>11.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p>
<p>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p>
<p>13. <삭제, 2018.12.31.></p>
<p>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p>
<p>15. <삭제, 2014.11.28.></p>
<p>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p>
<p>17.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18.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p>
<p>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p>
<p>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p>
<p>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p>
<p>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p>
<p>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p>
<p>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p>
<p>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p>

9.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3)

덮개 · 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코일
 - 라. 대형 식재용 나무
 -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최소 4개의 고정점을 사용하고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해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쪘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
 - 라.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을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고정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정해야 한다.

10.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법 제12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4.11.28.>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할 것. 다만,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가. 운송약관의 변경
- 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 마.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 사.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아.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업무개시 명령(법 제14조)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여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항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3. 과징금의 부과(법 제21조)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과정금의 용도

- 1) 화물 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의 건설과 확충
-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과정금의 용도)

1.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사업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 지사”라 한다)가 설치 ·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훈련 사업

- 4) 신고포상금의 지급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법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과 “5)” 또는 “1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 한 경우
 - 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 5) 법 제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7) 제 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7-3) 삭제
- 7-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개선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시행령 제6조제1항)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 가목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 사상의 정도 : 중상 이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顛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 이상인 경우(교통사고지수 = $\frac{\text{교통사고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2.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2-2)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2-3)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법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법 제24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나. "가"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시행령 제9조)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라.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4])

항 목	허 가 기 준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상용인부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 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가” 및 “나”에 따른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 바. “가”부터 “마”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8조의3)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 라. 화물의 종류, 수량
 -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영 제9조제1호에 따른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법 제29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 다. “가” 및 “나”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41조의7 관련 [별표5])	
항 목	허 가 기 준
허가기준 대수	○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0억원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운송시설	○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지급 등의 결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

라.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가. 운송약관의 변경

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라.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마.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가입

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절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교육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법 제8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춘 후
다) 또는 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1. 신규검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자격시험 실시일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라)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 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3) "1)"과 "2)"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법 제4조(결격사유)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법 제23조)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업무개시 명령 위반)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반)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법 제10조)

-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1)”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④ 삭제<2011.12.31>
- ⑤ 협회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2)

-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
- 나. “가”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検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규검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자격시험 실시일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2) 유지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 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3)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시행규칙 제18조의3)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가’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나’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일시·장소·방법·과목, 응시·신청요건, 응시·신청절차,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 발표일, 발표방법 및 그 밖에 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마. “가”항·“다”항 및 “라”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라”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시행규칙 제18조의4)

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3) 화물 취급 요령
-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관련 [별표1의2])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24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 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60분
	라. 위험예측 및 회피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90분
	마.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90분
	바.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분
	사. 탑재장비 운전실습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	60분
	아.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분

5.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시행규칙 제18조의6)

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6. 교육과목(시행규칙 제18조의7)

-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8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시행규칙 제18조의8)

- 가.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가’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협회는 “나”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협회(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진 1장

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진 2장

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시행규칙 제18조의10)

-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제1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라. 관할관청은 “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업무개시 명령 거부)을 위반한 경우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8) 제12조제1항제7호(택시 유사표기행위)를 위반한 경우
 -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나.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절 사업자단체

1. 협회의 설립(법 제48조)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가. 협회의 사업(법 제49조)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7) “1)”부터 “5)”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나. 연합회(법 제50조)

- 1)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2) 연합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및 법 제49조(협회의 사업)를 준용한다.

2. 공제사업(법 제51조)

- 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나. 공제조합의 설립(법 제51조의2) :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다. 공제조합사업(법 제51조의6)

-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7)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시행령 제12조)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제5항)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법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유상운송의 허가사유(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법 제56조의2)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제8절 보칙 및 벌칙 등

1. 운수종사자의 교육(법 제59조)

가.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운수종사자 교육(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법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3. 보고와 검사(법 제61조)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제7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제24조제6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또는 제29조제3항(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가”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4.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4-1.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5.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0조제2항)

-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기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70조 참조

6. 과징금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3)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단위: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가맹 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	20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15	15	-	30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30	-	60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10
8.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10. 삭제 <2014.11.28.>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단위: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맹 사업
		일반	개별	용달		
1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12. 삭제 <2018.12.31.>						
13. 차량을 1대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180	90	90	-	-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60	-	180
15.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3제1호	-	-	-	20	-
16.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제38조의3제4호	-	-	-	20	-
17.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	-	-	20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	-	-	20	-

7. 화물운송업 관련 업무 처리(법 제10조, 제55조, 제56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가. 시·도에서 처리하는 업무(일부 업무는 시·군·구에서 처리될 수 있음)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3-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 5)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 가맹점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고의 접수
- 6)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상속의 신고
-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 11) 화물자동차 사용 정지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 12)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15)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에 따른 청문
-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18)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의 수령
- 19) 삭제 <2015.12.30>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 협회의 설립인가
- 21) 협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2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2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2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나. 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다. 연합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

- 1)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 3)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론 및 실기교육
- 4)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 6)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 7)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

제4장 자동차관리법령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합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

2. 정의(법 제2조)

가.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궁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나.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시행령 제3조)

-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3. 자동차의 종류(법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가.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3)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다.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라.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마.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2절 자동차의 등록

1. 등록(법 제5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10조)

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

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2)

나. “가”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 못한다.

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가”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

※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

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가”부터 “바”까지를 준용한다.

아.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3. 변경등록(법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의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과태료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 30만원(시행령 별표 2)

4. 이전등록(법 제12조)

-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라. “다”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 마. “가”와 “다”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5. 말소등록(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 및 "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마.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가’ 내지 ‘마’의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①신청 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과태료 5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시행령 별표 2)

- 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사.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1.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법 제18조)

가. (삭제) <2015.8.11.>

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임시운행(법 제27조)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

- 1)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3)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4)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5)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6)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 7)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20일 이내
 - 8)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40일 이내
 - 9)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40일 이내
 - 10)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2년(가)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나.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시행규칙 제28조)
-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4)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 5)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 7)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29조, 시행령 제8조)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구조	①길이·너비 및 높이 ②최저지상고 ③총중량 ④중량분포 ⑤최대안전경사각도 ⑥최소회전반경 ⑦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자동차의 장치	①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②주행장치 ③조종장치 ④조향장치 ⑤제동장치 ⑥완충장치 ⑦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⑧차체 및 차대 ⑨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⑩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⑪창유리 ⑫소음방지장치 ⑬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⑭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⑮경음기 및 경보장치 ⑯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⑰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⑰-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⑱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⑲소화기 및 방화장치 ⑳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㉑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2. 자동차의 튜닝 (법 제34조, 시행령 제19조5항, 시행규칙 제78조)

- 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다. 자동차 튜닝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제외)
-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라. 튜닝검사의 신청서류

- 1)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
- 2)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3)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 점검 및 정비 명령 등(법 제37조)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3)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5절 자동차의 검사

1. 자동차검사(법 제43조)

자동차 소유자(아래 “가”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라.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지정정비사업자도 대행할 수 있음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별표 15의2)

차종 차령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 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2년 이하	2년 초과	8년 이하	8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유효 기간	2년 (최초 4년)	1년 (최초 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하여 자동차검사(정기검사, 투닝, 임시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법 제43조제4항)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시 · 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 ·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의 도난 ·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3.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官能検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나.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다.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등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2)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3)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5) 종합검사기간 :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 6)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검사 :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2)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마.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사유 및 제출서류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통서류(자동차등록증)

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처분서 (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군수 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섬 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지와 연결된 섬과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바.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차에 대한 독촉 :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①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②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과태료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 30만원(시행령 별표2)

-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과 배출가스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09.3.30)”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제5장 도로법령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의 정의(법 제2조)

가.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가)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 나)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다) 궤도
- 라)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덤기시설
- 마)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2)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 · 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

3) 도로의 부속물 :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 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 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 공동구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3. 도로의 종류와 등급(법 제10조)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 가.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한 도로
- 나.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한 도로
- 다. 특별시도(特別市道) · 광역시도(廣域市道) :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및 그 밖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한 도로
- 라.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및 그 밖의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마. 시도(市道) :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로서 특별자치 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바. 군도(郡道) :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및 그 밖의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사. 구도(區道) :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자치구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7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나. 도로에 토석(土石),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다.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13조제1항)

2. 차량의 운행제한(법 제77조)

- 가.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시행령 제79조제2항)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9조제4항)

- ①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②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③차량의 제원(諸元)
④운행기간 ⑤운행목적 ⑥운행방법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①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②차량 중량표 ③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나. 도로관리청은 “가”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 포함)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5조제4호)

다. 도로관리청은 “가”的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7조제1항)

3.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법 제78조)

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5조제5호, 제6호)

4.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법 제48조)

-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이 '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 다. "가"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 라. 도로관리청은 "가"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시행령 제47조)

제47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법 제49조)

- 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가"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5조제2호)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령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 다.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 라.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
- 마.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흘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 바.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사.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 아.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자.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 차.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
- 카.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1.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법 제58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

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3)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
3. "가" 또는 "나"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가"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가”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공회전의 제한(법 제59조, 시행규칙 제79조의10)

- 가.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1차 위반(과태료 5만원), 2차 위반(과태료 5만원), 3차 이상 위반(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15)
- 나.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 대상차량 ※

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나”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운행차의 수시 점검(법 제61조)

- 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 운행자는 “가”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4조)
- 다. “가”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시행규칙 제83조)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